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3
----------	-----------

제출일자	2010.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422호, 20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상향 결정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함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2009년의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를 개정(2009.5.29, 조례 제1926호)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국회일정상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도까지 연장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례 제1926호(2009.5.29)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입법보완 시까지 세부담을 완화함(안 조례 제1926호 부칙 제2조).
 -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 :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90조, 제237조, 제238조의2
- 2010년도 행정안전부 서울인하 권고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2. 19. ~ 2009. 3.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26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p>